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92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백혜련·김병주·김승남

양경숙 • 양이원영 • 윤관석

이인영 • 전용기 • 전재수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굴착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현행법 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 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모두 11종뿐임.

그러나 굴착기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등과 위험성에 있어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는 데 예외가 될 수 없음.

이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 써, 제2의 참사를 방지하고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안전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의"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2)의 건설기계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u>자</u>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u>자</u>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u>한다)의</u> 운전자가 「도로교통	한다) 및 「도로교통법」 제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	조제17호가목2)의 건설기계의-
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	
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	
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